

서울특별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164호
- 나. 제안자 : 서윤기의원외 27명
- 다. 제안일자 : 2016년 4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5월 4일

## 2. 제안이유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토록하며, 그밖에 인적자원개발 관련사항을 점검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 강구 등을 시장 책무로 규정(안 제3조)

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라.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제14조)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및 인적자원개발계획 수립 등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배경 및 타당성

- 인적자원개발이란 개인, 집단, 조직의 효율향상을 위한 조직개발과 훈련·개발(경력개발)을 통합한 것으로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의미함.
- 정보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산업과 경쟁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향후 조직 경쟁력의 원천은 우수한 인재 확보와 조직원들의 능력개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한 경쟁력 및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창조적 인적자원개발, 변화에 따른 적응과 미래 준비를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로 그 영역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하 “법”)을 제정하였고, 이와 함께 범정부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의 통합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 출범함에 따라<sup>1)</sup> 이전의 국가인적자원개발 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총괄·조정 기능이 폐지되었고 기본계획도 제2차(2005~2010년)까지 수립하는데 그침.
- 이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과제는 부처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2009년에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음.(2009.1.25. 정부제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됨)
- 정부의 총괄정책 중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조례를 제정했던 타 시도들도 해당 조례에 따른 총괄 정책이 아닌 부서별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 인적자원개발정책 및 사업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이 유일하며, 서울 특별시(이하 “시”)도 4년 연속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
-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 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동안 조례가 불비하였고, 현재 시는 명칭은 유사하나 법에서 근거한 협의회가 아닌 고용

---

1)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 국가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함. 2013.3월 개정 이래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됨.

노동부(“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인력양성을 위한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시 및 서울 상공회의소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 통해 서울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음.
- 인적자원개발협의회와 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한 기능과 성격은 다르지만, 동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시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시책은 전무한 상황임.
- 따라서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 사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법적조치로 볼 수 있음.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1) 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 안 제2조는 법에 따라 인적자원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를 통해 국가의 시책과 지역

적 특성,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 간의 균형을 고려하고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정책목표와 방향 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조례의 효력범위가 서울특별시임을 감안할 때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조례상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역 인적자원개발”로, 안 제2조 제1호의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을 “시민 개개인·사회 및 서울특별시의 발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 인적자원개발협의회 설치(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를 설치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평생학습,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관련 기관 간 정책의 총괄·조정,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자체사업의 평가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30명 이내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협의회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시의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한편, 동 제정안의 소관부서는 일자리 및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협의회 기능과 역할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 간 정책의 총괄·조정,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자체사업의 평가 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어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소관하기에는 관할 범위가 넓어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앙정부에서도 교육부(인재직무능력정책과)가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 시행중인 3곳의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 경상남도 ‘교육지원담당관’(기획조정실 산하)을 주관부서로 하고 있음.

타 광역자치단체 등	주관부서(해당과)
중앙정부	교육부(인재직무능력정책과)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교육지원담당관

- 따라서 시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례안 소관부서의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정안의 “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지원하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규정에 따른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일 뿐만 아니라 일부 기능 및 위원회 구성이 유사해 기존 위원회를 보강하여 대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개요> [참고자료1]**

- 서울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주 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노동단체, 대학,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이 참여하여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임.(2015년 7월 24일 구성)
- 관련근거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71호)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사업 협약서('15.7.24)
- 사업내용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 지역산업인력 수요조사(정기조사, 수시조사, FGI조사) 및 유관기관 워크숍
  - 공동훈련센터 훈련계획 심사, 양성훈련 및 향상훈련 실시, 훈련 모니터링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 위원회 역할
  - 지역 인력 수요조사 및 분석, 지역내 인력양성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 단위 인력양성계획 수립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기능 총괄
- 소요예산 : 7억 6,138만원  
(시비 1억 6,300만원/국비 5억 9,838만원(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원금))

### 3)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인적



자원개발 정책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 책임관은 관련정책 및 사업의 조정·평가 기능을 부여하여 시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여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서 정책간의 연계 및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법 시행령(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근거도 충족하고 있음.

#### 4)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제정안은 인적자원개발 계획수립과 정책개발·평가분석 및 연구의 수행, 우수 인적자원개발 모형 발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지원센터의 설치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개발, 우수 인적자원개발 모형 구축,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평가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체계적 추진 및 관련 투자의 효율성의 제고가 기대됨에 따라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상에 지원센터 내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기능이 존재하기는 하나, 지원센터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책임관의 지정 등 조례안의 내용 대부분이 인적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2조2)에 비추어볼 때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제정안은 의원발의안으로 지원센터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조직편성권을 사전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제기될 수 있으나 통상 임의규정으로 정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재량이 있다고 보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라. 종합의견

- 인적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 및 투자의 중요성은 꾸준히 대두되고 있으며, 시의 통합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함.

2)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①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의 지원
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평가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특정평가 등의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조례상의 “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현재 시가 운영지원 중인 “서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유사점이 많아 동 위원회를 보강하여 대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례에 따른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지원에 대한 평가를 위해 “지원센터”보다는 “평가센터”를 설치·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현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하는 제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되며, 본 조례의 제정과 효율적인 정책운형을 위해서는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통합하고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총괄, 조정, 평가 기능과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자료1] 2017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명단

(2017. 2. 17현재)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참여자격	비고
1	위원장	이동근	서울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산업계	필수
2	위원장	류경기	서울특별시	행정 1부시장	지방자치단체	필수
3	위원	임경식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정부유관기관	필수
4	위원	김승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	정부유관기관	필수
5	위원	정진우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담당관	지방자치단체	
6	위원	한상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정부유관기관	
7	위원	윤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정부유관기관	
8	위원	박용호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정부유관기관	
9	위원	백명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장	정부유관기관	
10	위원	정익수	서울산업진흥원	본부장	지자체유관기관	
11	위원	최봉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지자체유관기관	
12	위원	문제민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무	협회(전기)	전기ISC
13	위원	최병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센터장	협회(IT)	SW ISC
14	위원	김형태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협회(기계)	기계
15	위원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협회장	협회(서비스)	서비스
16	위원	이찬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협회(관광)	관광
17	위원	이헌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무	산업계	IT
18	위원	정장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	협회(토목)	융복합
19	위원	이장욱	한국표준협회	본부장	협회(경영,품질)	경영,품질
20	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산업계	경제단체
21	위원	유영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	산업계	경제단체
22	위원	장국찬	단국대학교	교수(겸임)	HRD전문가	선임위원
23	위원	김창수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노동단체	